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542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3261	김선교의원	'24.8.2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06171	박덕흠의원	'24.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li></ul>
	2206203	김선교의원	'24.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06758	임미애의원	'24.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06783	윤준병의원	'24.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4.21.)</li><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07683	문대림의원	'25.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7.9.)</li><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08378	조경태의원	'25.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7.9.)</li><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2210872	박정현의원	'25.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5.7.9.)</li><li>-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li></ul>

건 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 일	심사경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0925	송옥주의원	'25.6.18.	<p>-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p> <p>-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5.) 상정</p>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에

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

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재지정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출하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탁수수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 마.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 바. 도매시장법인 임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75조).
- 사.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2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부류별로 지정하되”를 “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절차”를 “지정 및 재지정 절차”로, “지정에”를 “지정 및 재지정에”로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내용, 공시방법”을 “공시방법”으로 한다.

1.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 · 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 · 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제41조의2 및 제42조”를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2조의4”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를 “시기, 절차”로 한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제82조제2항제21호 중 “제42조를”을 “제42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를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로, “우려가 있는”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고”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를 “제42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다.

제86조제2호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재지정을”로 한다.

제90조제3항제4호의2 중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를 “아니한 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및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u>부류별로 지정하되</u> ,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u>재지정) ① -----</u>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u>-----부류별로 공모하여 지정</u>
② ~ ⑤ (생 략)	<u>-----하되-----</u>
<u>&lt;신 설&gt;</u>	<u>-----</u>
	<u>-----.</u>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매매방법)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인 권리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지정 및 재지정-----.

제32조(매매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 그 밖에 전담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  
-----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

1.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 · 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 매수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 · 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변동사항

4.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공시방법  
-----  
-----  
-----

정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결과를 제77조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권고의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u>&lt;신 설&gt;</u>	<p>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p> <p>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 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 람</p> <p>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p>
<u>&lt;신 설&gt;</u>	<p>③ (생 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 육훈련의 내용, <u>절차</u> 및 그 밖 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p>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p>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 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시기, 절차----- ----- ----- -----.</p>

한다.

1. ~ 20. (생 략)

21. 제4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 26. (생 략)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

----.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42조제1항을-----

22. ~ 26. (현행과 같음)

③ -----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 취소하여야 하고-----  
----- 취소하여야 한다.

1.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운영 실적 부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인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을 신규로 승인할 수 있 다.
제86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별칙) ----- ----- ----- -----.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u>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 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2. <u>제23조제1항 또는 제7항에</u> -- ---- <u>지정 또는 재지정을</u> -----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 ② (생 らく)	제9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u>아니한</u> <u>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u> <u>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u>	4의2. ----- ----- <u>아니한</u>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